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법제처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00. ~ 8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음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의3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센터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공익심사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공익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제28호 중 “과 및 센터의”를 “과의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4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의3제1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60명”을 “62명”으로 하고, “4급 3명”을 “4급 5명”으로, “인원을”을 “인원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1명)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, 별표 1의2, 별표 2, 별표 3, 별표 3의2,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대변인) ① (생 략)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, 홍보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 ③ (생 략)	제4조(대변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 ----.
제4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 (생 략)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·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· 법무담당관 · 국제교류담당관 및 민간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, 각 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 ③ ~ ⑦ (생 략)	제4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 --.
제4조의3(감사담당관) 감사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4조의3(감사담당관) ----- 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5조(운영지원과) 운영지원과장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5조(운영지원과) ----- 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6조(부패방지국) ① (생 략)	제6조(부패방지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부패방지국에 청렴정책총괄과, 청렴조사평가과, 부패영향분석과, 청탁금지제도과, 행동강령과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두고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센터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⑧ (생략)

제6조의2(심사보호국) ① (생략)

② 심사보호국에 심사기획과, 부패심사과, 공공재정환수관리과, 보호보상정책과, 신고자보호과, 신고자보상과 및 공익심사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공익심사팀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18. (생략)

19. ~ 27. 삭제

28.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

② -----

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-----.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심사보호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공익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-----.

③ -----.

1. ~ 18. (현행과 같음)

28. ----- 과의 -----

는 사항

④ ~ ⑨ (생략)

제7조(고충처리국) ① ~ ③ (생략)

④ 고충처리국에 민원조사기획과 · 행정문화교육민원과 · 국방보훈민원과 · 경찰민원과 · 재정세무민원과 · 복지노동민원과 · 산업농림환경민원과 · 주택건축민원과 · 도시수자원민원과 및 교통도로민원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⑤ ~ ⑭ (생략)

제8조(행정심판국) ① ~ ③ (생략)

④ 행정심판국에 행정심판총괄과 · 행정교육심판과 · 재정경제심판과 · 국토해양심판과 · 사회복지심판과 · 환경문화심판과 및 운전면허심판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⑤ ~ ⑪ (생략)

제9조(권익개선정책국) ① (생략)

④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고충처리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⑤ ~ ⑭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행정심판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⑤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권익개선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권익개선정책국에 제도개선
총괄과·경제제도개선과·사회
제도개선과·국민신문고과·민
원정보분석과 및 적극행정국민
신청팀을 두고, 각 과장은 부이
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
으로, 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
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
다.

③ ~ ⑧ (생략)

제9조의2(정부합동민원센터) ①
~ ③ (생략)

④ 합동민원센터에 고충상담기
획과, 민원신고심사과, 특별민
원심사과, 일반상담총괄과, 경
제민원상담과 및 사회민원상담
과를 두며, 각 과장은 서기관 또
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⑤ ~ ⑩ (생략)

제9조의3(청렴연수원) ① 청렴연
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
의 원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
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연수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
육운영과를 두며, 교육지원과장
및 교육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

② -----

----- 부이
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
기관으로, 팀장은 과학기술서기
관·서기관 -----
--.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정부합동민원센터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과학기술서
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⑤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3(청렴연수원) ① -----
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
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② -----

----- 공업사무관

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,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(행정사무관 1명, 행정주사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0명(3·4급 3명, 4급 3명, 4·5급 3명, 5급 25명, 6급 17명, 7급 4명, 8급 3명, 9급 2명)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1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

②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, 별표 3의2의 정원 중

----- 10퍼센트-----

② -----

--- 62명----- 4급

5명 -----

----- 인원 및 「공공감

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

따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

(4급 1명)은 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----- 10퍼센트-----

1명(행정사무관 1명)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③ (생략)

제13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
①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」 제16조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”란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중 1개 직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중 2개 직위를 말한다.

②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, 민간협력담당관 및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본문 관련)

총계	483
정무직 계	4
위원장(장관급)	1
부위원장(차관급)	3
별정직 계	1
비서(6급 상당)	1
일반직 계	475
고위공무원단	9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	6
부이사관 또는 서기관	6
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7
서기관	19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1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39
전산사무관	2
검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통계사 무관 · 부감사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 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시설 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	156

관 ·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
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보호사무관 · 검찰사무관 · 마약수사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	20
행정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3
전산주사	1
운전주사	1
행정주사 · 감사주사 · 검찰주사 · 공업주사 · 관세주사 · 농업주사 · 마약수사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보건 주사 · 보호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세무주사 · 시설 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임업주사 · 전산주사 · 출입 국관리주사 · 통계주사 ·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 주사	138
행정주사 · 세무주사 · 검찰주사 · 시설주사 또는 전산 주사	1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2
행정주사보 · 세무주사보 · 관세주사보 · 사회복지주 사보 · 공업주사보 · 농업주사보 · 임업주사보 · 보 건주사보 · 식품위생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 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· 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 사보	18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	15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 보	8
운전서기보	3

기록연구사	1
사무운영서기보	2
전문경력관 가군(비상계획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)	4
전문경력관 가군(제도개선 심의지원 담당)	1
전문경력관 다군(속기 담당)	1
경찰공무원 계	3
경정	1
경감	2

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단서 관련)

총계	486
정무직 계	4
위원장(장관급)	1
부위원장(차관급)	3
별정직 계	1
비서(6급 상당)	1
일반직 계	478
고위공무원단	9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	6
부이사관 또는 서기관	6
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7
서기관	19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1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39
행정사무관	1
전산사무관	2
검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부감사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임업	156

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
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보호사무관 · 검찰사무관 · 마 약수사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	20
행정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3
행정주사	2
전산주사	1
운전주사	1
행정주사 · 감사주사 · 검찰주사 · 공업주사 · 관세주사 · 농업주사 · 마약수사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보건주사 · 보호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세무주사 · 시설주사 · 식품 위생주사 · 임업주사 · 전산주사 · 출입국관리주사 · 통 계주사 ·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	138
행정주사 · 세무주사 · 검찰주사 ·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 사	1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2
행정주사보 · 세무주사보 · 관세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농업주사보 · 임업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식품위생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 신주사보 · 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	18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	15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8
운전서기보	3

기록연구사	1
사무운영서기보	2
전문경력관 가군(비상계획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)	4
전문경력관 가군(제도개선 심의지원 담당)	1
전문경력관 다군(속기 담당)	1
경찰공무원 계	3
경정	1
경감	2

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]

정부합동민원센터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1항 관련)

총계	55
일반직 계	55
고위공무원단	2
서기관	2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4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2
행정사무관	2
행정사무관 · 보호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	1
행정사무관 · 검찰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부감사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	17
행정사무관 · 검찰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출입국관리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	1
행정주사	4
행정주사 · 감사주사 · 검찰주사 · 공업주사 · 관세주사 · 농업주사 · 마약수사주사 · 보건주사 · 보호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세무주사 · 시설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임업주사 · 전산주사 · 출입국관리주사 · 통계주사 ·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	12

행정주사 · 검찰주사 · 공업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세무주 사 · 시설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임업주사 · 전산주 사 또는 환경주사	1
행정주사보 · 검찰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· 세무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식품위생주사보 · 임 업주사보 · 전산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	3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	2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1
행정서기보	1

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]

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2항 본문 관련)

총계	24
일반직 계	24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3
행정주사·세무주사·관세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6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3
행정주사보·세무주사보·관세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2
행정주사보·세무주사보·관세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1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	1
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2
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2
방호서기보	1
운전서기보	1

전문경력관 가군(번역담당)

1

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의2]

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2항 단서 관련)

총계	25
일반직 계	25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3
행정주사·세무주사·관세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6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3
행정주사보·세무주사보·관세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2
행정주사보·세무주사보·관세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1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	1
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2
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2
방호서기보	1

운전서기보	1
전문경력관 가군(번역 담당)	1

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6]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15조 관련)

제15조 관련 한시정원(준속기한: 2024년 12월 31일)

총계	3
일반직 계	3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1
행정주사 · 감사주사 · 검찰주사 · 공업주사 · 관세주사 · 농업주사 · 마약수사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보건주사 · 보호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세무주사 · 시설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임업주사 · 전산주사 · 출입국관리주사 · 통계주사 ·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	1
행정주사보 · 세무주사보 · 관세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농업주사보 · 임업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식품위생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· 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	1